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

제 정 : 2008.8.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GS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자산) 이 기준은 투자신탁재산을 각 투자신탁에 배분할 경우에 적용하며, 대상자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단기대출 등으로 한다.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90조제3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자산배분

제5조(자산배분원칙) ①운용담당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투자신탁별 사전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사는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산배분절차)** ①투자신탁별로 취득 또는 매각할 자산에 대하여 매매이전에 배분하고 제10조의 매매주문서를 작성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전달한다.
- ②투자신탁별로 취득 또는 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것은 다수의 투자신탁에 대하여 동일계좌를 사용하여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결과를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배분할 것
- ④동일한 종목에 대한 투자신탁별 배분은 동일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주문접수순으로 한다.
- ⑤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규 등(약관, 운용계획서 포함)의 위반 및 위반 방지를 위한 체결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체결수량정정 또는 투자신탁정정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제7조(수요예측 및 입찰을 통한 배분)** ①공모주 등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안분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수요예측을 통한 운용이 50% 이상임을 명기한 경우에는 해당투자신탁에 배분신청수량을 우선적으로 안분배분한다.
- ③입찰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입찰일 당일 해당 투자신탁에 배분한다.

제8조(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3장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9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①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투자신탁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동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자산배분내역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집행

제10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종목명,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배분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 증권업협회의 채권종류별 및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매매주문서상의 주문가격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및 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지정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지정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투자신탁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및 주문수량만을 작성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매매주문의 집행)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배분 및 자산배분내역서 작성

제12조(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 ①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자산배분내역서에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전산상으로 각 체결단가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배분할 경우에 체결가격과 배분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야 한다.

제6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

제13조(겸직금지)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등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간접투자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 지는 매매거래, 프로그램매매 및 장내과생상품 거래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71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